

예 산 총 칙

2021년도 본예산

제 1 조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1,120,000,000	33,600,000
일반회계	958,000,000	28,740,000
특별회계	162,000,000	4,860,000
공기업특별회계	59,500,000	1,785,000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40,500,000	1,215,000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19,000,000	570,000
기타특별회계	102,500,000	3,075,000
수질개선특별회계	7,720,000	231,600
의료보호비특별회계	3,000,000	90,000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특별회계	900,000	27,000
주택사업특별회계	500,000	15,000
치수사업특별회계	14,635,000	439,050
주차장운영특별회계	5,065,000	151,950
대지보상특별회계	285,000	8,550
김천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53,700,000	1,611,000
김천시폐기물처리시설사업특별회계	16,292,000	488,760
댐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346,000	10,380
김천시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57,000	1,710

제 2 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세입·세출예산서"와 같다.

제 3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8,294,616천원으로 한다.

(일반예비비 7,000,000천원, 재해·재난목적예비비 1,294,616천원, 내부유보금 8,281,355천원)

제 4 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58,400,000천원으로 한다

제 5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기준 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 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